

火災保險이 社會에 미치는 効用

—特殊建物火災保險을 中心으로—

I. 損害保險의 一般的 機能

① 損害保險의 本質

損害保險의 本質에 대한 定義나 學說은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各自 다르게 提唱되어 왔다.

損害保險이란 偶然한 事故에 對備한 財產保護를 위한 經濟制度, 不幸에 對備한 相互扶助的인 經濟施設이니 또는 安心을 代價로 하는 商品등 見解의 差異에 따라 다르게 把握되고 있다.

이러한 本質에 대한 定義는 損害保險의 發展史와 함께 變遷되어 온것으로 이는 單純한 危險에서 複合的 危險을 擔保하게 된 保險商品의 質의變化와 財產上의 直接損害에서 間接損害까지도 擔保하게 된 補償範圍의 擴大등 保險商品의 內容에 의하여 다르게 把握되는데 그 理由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損害保險의 本質에 대한 簡單한 暗示는, 비록 그 自體가 直接的인 定義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다음의 말에서 엿볼수 있다.

—한 사람은 萬人을 위하여, 萬人은 한 사람을 위하여—

위의 標語는 社會政策의 立場에서 본다면 要救護對象者에 대한 相互扶助의 呼訴임이 틀림없으나 하나의 經濟施設 내지 經濟制度面에서 본다면 損害保險의 本質을 暗示한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損害保險의 成立基礎는 大數의 法則에 있음은 異論이 없다. 損害保險이 하나의 經濟制度로서 成立하고 存續하려면 同一危險에 危脅을 받고 있는 多數人的 集團이 있어야 하고, 그 多數集團中一定期間동안에 豫測한 危險을 當하는 사람과 當하지 않는 사람이 結果的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李 在熙

(汎韓海上事務)

例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有形財產 所有者는個人이든, 企業이든 火災란 危險에 危脅을 받고 있으며 그 危險이 언제가各自에 닥칠것으로豫測하고 있는데, 이는同一한 危險을 가지고 있는 多數集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一定期間이 지나고 난結果同一危險을 가지고 있던 集團中多數中의 一部만이 事實上 그 危險을 當하여 財產上の 損失을 보았을 경우, 그 多數人間에 保險關係가 存在하였다면 被害者は 多數인이 내놓은 賦金—保險料—으로서 損害를 補償받게 되는데 이러한 關係가 바로 「한 사람은 萬人을 위하여 萬人은 한 사람을 위하여」란 말에 的中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即「한 사람은 萬人을 위하여」란 뜻은 保險의 購入을 그리고 「萬人은 한 사람을 위하여」란 뜻은 保險加入의 結果를 客觀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保險制度의 가장 常識的인 把握方法이고, 保險의 本質에 대한 가장 쉬운 暗示的表現이라고 하겠다.

② 損害保險의 機能

(가) 本來的 機能

損害保險의 本來的 機能은 損害保險의 本質에서 把握되는 것으로 多數集團이 以及 保險料의 蒂積分中에서 그 集團이 構成員中, 財產上の 損害를 입은 사람에게 그 損害를 補償하는 機能이다.

個人이나 企業이 財產上の 損害를 입게되는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다.

個人의 경우, 家長의 失職, 家族의 重病, 學費의 支出, 他人에 대한 損害賠償, 災害에 의한 損失등을 主로 들수 있고, 企業의 경우는 經濟的, 社會的 變亂, 從業員의 善惡行爲,豫測錯誤, 計劃蹉跌, 管理不良, 經營能力不足, 市場與件의 變動과 偶然한 災害등을 들수 있다.

이와같이 個人이나 企業의 財產에 損失을 가

져오는 땅은 要因中 損害保險에서는 主로 偶然한 災害—火災, 暴風雨, 洪水, 暴動, 盜難, 破損—로 인하여 생기는 損害를 補償함으로써 個人の 私生活을 保護하고 企業活動의 再開를 可能케 하는등 根本的인 經濟基盤의 維持手段으로서의 經濟的, 社會的機能을 가지고 있다.

(나) 派生的 機能

損害保險의 本來的 機能은前述한바와 같이 損失補償機能이지만 派生的機能으로서는 保險資金을 통한 金融的機能을 들수 있다.

普通 損害保險契約은 保險期間이 1年이므로 그 期間內에 事故가 發生하지 않으면 保險料의 一定部分은 保險會社의 利益으로 歸屬하게 된다 그러나 保險料中 事業費 該當 部分外에는 損害補償을 위한 積立金으로 保險期間이 終了될때까지 留保되고, 이 留保된 積立金은 保險會社의 資本금과 함께 預金, 不動產, 또는 有價證券에의 投資나 貸付등에 利用됨으로써, 直接 또는 間接의 金融機能을 擔當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個個의 保險契約者が 支出하는 保險料는 保險契約者の 消費性 支出에 不過하여 產業資金化가 될수 없는것이나, 이것이 保險 매카니즘을 通하는 過程에서 產業資金化 되는 것은 또 다른 意義가 있는 것이며, 이 產業資金이 保險契約者에게 金融支援의 財憑이 될때 保險은 財產保護와 함께 資金供給源의 二重의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 損害保險機能에 대한 認識不足

損害保險制度가 사람의 經濟的 不幸을 除去해주고, 個人이나 企業을 破滅의 窮地에서 救濟해주는 社會保障의in, 그리고 合理的인 經濟施設인에도 不拘하고 自發的인 需要의 喚起가 어려운것은 否認할수 없는 事實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個人이나 家庭의 安全을 위한 迷信的 行爲에 費用을支出하고 企業에 있어서는 市場開拓費, 景氣豫測費, 職員들의 品位維

持를 위한 教育費, 損失, 節減이나 利益 增大를 위한 여러가지 費用을 支出하는 것은 必要하고, 正當한 支出임은 認定하면서도 個人이나 企業의 經濟的 損失을 補償해 주고 때로는 이들을 再起不能의 狀態에서 回生시켜 주는 保險에 대한 費用은 왜 不必要한 浪費性 經費로誤解하게 되는 것인가?

保險에서 搞保하고 있는 危險—災害—以外의 問題들에 의해서는 企業의 利益이 減少된다거나 若干의 損害가 發生하는 등, 企業存亡의 要因들이 될수는 있지만, 保險擔保危險은 企業의 存亡과 直接 關聯되는 要因이 되는 것이므로, 企業經營面에서 보면 保險料 支出이 약탈로 第一次의 重要性을 지닌 絶對費用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保險料 費用에 대한 一般的의 認識不足은 첫째 保險이 保險料 支給이란 一方의 紙面에 대하여 現實적인 反對對付가 同一時點에서 實現되지 못하는 點, 둘째 保險도 셔어미스業의 一種인데, 다른 셔어미스業은 代價의 支給과 거의 같은 時點에서 實需要者에 代價 支給의 滿足度를 實感시키는데 反하여 保險需要者는 그 滿足感을 느끼지 못하는 點, 셋째 保險加入의 動機는 偶然한 災害를 爲했을때 損害를 補償받는 現實적인 事實에 期待感을 가지는 것인데 實際, 損害補償을 받게 되는 加入者는 確率적으로 500名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保險料는 “버리는 費用”으로 認識되고, 그 위에 “지금까지 別일 없었는데”하는 莫然한 懒惰이 쉽게 人間의 思考를支配하게 되는 點 등을 들수 있다.

따라서 國家에 의한 資金供給의 不足과 企業自體의 資本蓄積의 零細性을 免치 못하는 產業構造下에서는 國家經濟의 觀點에서 損害保險制度의 自發的 利用에만 期待할수 없는 現實的 要請 때문에 1973年 2月 6日 公布된,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以下 特

別法이라 한다)의 制定은 大局의 見地에서의妥當性을 지녀것 이라고 하겠다.

II. 特別法의 制定動機와 그 施行

가) 特別法의 制定動機

特別法의 制定動機에 대하여는 그 間에서 紙上을 통하여 알려 졌지만 여기서 本論文의 理解를 둘기 위하여 略述해 보고자 한다.

1972年을 前後하여 서울市內에서는 大旺그리 大然閣호텔, 市民會館등의 大火가 發生하였다. 특히 大然閣호텔은 財產被害와 人命損傷에서 그리고 市民會館은 人命被害面에서 世界的인 大火로 指出받게 되고 火災의豫防과 鎮壓對策의 不在란 印象을 國內外에 남기게 되어 國家의 人體面은 칼할수 없이 墜落하였다. 講민아니라 莫大한 人命被害는 그에 따른 適切한 補償對策이 없어 長期間 社會問題화 되었고, 火災의 發生原因이 防火法規에 違背된 建築許可와 火氣取扱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徹底한 對應策이 要望되었다.

事實上 우리나라의 建築法規나 防火法規는 法律의 規制內容上으로는 不足한 規定이 있는 程度지만 實際의 執行過程에서 資金, 技術 및 人力面의 事情 때문에 防災의 實效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他人資本에의 依存度가 높은 企業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人命被害에 대한 補償問題가 加重的인 不作用을 招來하기 때문에 防災先證에 대한 安全點檢과 火災로 부터의 財產損失의 補償 그리고 人命被害에 대한 賠償問題를圓滿하게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 이 問題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保險會社와의 紐帶을 着想하게 되었고, 이를 強力하게 推進하기 위한 方便으로 特別法을 制定하기에 이르렀 것이다.

그러므로 特別法의 制定趣旨는 지금도 간간이 誤認되고 있는 것처럼 火災保險加入의 義務化

가 營利會社인 保險會社에 收益增大에 있는것이 아니며, 火災로 부터의 被保險者 保護를 國家次元에서 誘導하고 나아가서는 保險會社로 하여금 防災活動을 義務化시킨것이라고 하겠다.

나) 特別法에 의한 保險加入物件의 範圍

特別法의 根本趣旨는 前述한 바와같이 安全點檢, 財產損失의 補償과 身體損害賠償制度를 確立시키는데 있으나, 保險加入物件에 대하여는 一定한 範圍로 制限하고 있다. 同法의 規定에 의한 保險加入 對象物件(以下 特殊建物이라 한다)은 4層以上의 建物, 國有建物, 教育施設, 百貨店, 市場, 醫療施設, 興行場, 宿泊業所, 工場, 共同住宅과 기타 多數人이 出入 또는 勤務하거나 居住하는 建物등으로 하고 있으며 地域의 範圍도 特定地域에 局限되어 있어 모든物件을 對象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이 保險의 取扱會社가 營利會社인 損害保險會社이고, 強制加入物件의 擴大에서 일어나기 쉬운 契約自由權에 대한 侵犯을 最少限度로 抑制하는데 力點이 있는것 같다. 앞서 列舉한 特殊建物의 特色을 보아도 그 모두가 多數人の 出入이 多은 建物들로서 建物自體의 被害보다 身體賠償責任制度의 確立에 主眼點이 있으며 特別法 第 4 條에는 建物所有者의 人命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을 規定하고 있어, 特別法의 바라는 바가 社會保障의 側面에 있음을 염볼 수 있다.

事實 現在까지의 經驗으로서는 火災로 인하여 第3者의 身體에 損害를 입혔을 경우, 火災原因이 不明하거나, 加害者が 責任이 없는 方向으로 誘導되는 傾向이 있어 被害者は 賠償請求의 相對方 마저도 찾지못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수가 非一非再하였고, 비록 請求의 相對方을 찾았다 하더라도, 被請求者の 財政的 事情으로 應分의 補償을 받지 못한것이 우리의 實情이었다. 特別法이 마련된 現時點에서도 法上 賠償金額의 限

度가 現實과 지나치게 遊離되고 있어 所期의 目的을 充分히 達成할수 없지만, 根本의인 非理를 除去하는 契機는 마련 되었다고 하겠다.

III. 特殊建物火災保險이 社會에 미치는 效用

① 直接的 效用

特殊建物火災保險이 社會에 미치는 直接의 效用은 損害保險의 機能을 論할때 散發의으로 指摘된 바 있으나 여기서 이를 要約하면, 個人이나 企業의 財產이 火災로 인하여 被害를 입었을 때 被害復舊를 可能케 함으로써 個人的 社會活動과 企業의 經營活動을 繼續케 하고 個人이나 企業이 他人과의 賠償責任 問題로 紛爭이 생길 경우 그 解決의 一翼을 擔當케 하는것이라고 하겠다.

그間 우리나라의 經濟成長度는 高度의 水準을 維持하여 왔으나, 그 背後에는 海外資本의 影響이 絶對的 比重을 차지 하고 있으며, 國內에 있어서도 自己資本 보다도 他人資本에의 依存度가 월등 큰 作用을 하고 있으므로, 災害를 當할 경우 自力再起는 悲觀的 實情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이러한 與件下에서는 企業이나 個人을 破滅에서 救濟해 주는 合理的이고 現實의 方便은 保險이란 經濟施設을 利用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믿어진다. 다만 經營面에 있어서 企業活動上 必要 不可缺한 費用으로 認識되고 處理되어야 할 保險料가 “버리는 費用”으로 그릇 認識되고 있는 風土이기 때문에, 企業이나 個人이 自己責任下에 解決하여야 할 問題들을立法手段을 통하여 誘導 解決치 않을수 없는 點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하겠다.

② 間接的 效用

(가) 特殊建物에 대한 安全點檢
物殊建物火災保險契約을 처음으로 締結하거나 이미 締結된 保險契約이 更新될 때에는, 損害保

險會社를 代理하여 保險을 引受하고 있는 韓國火災保險協會(以下 協會라 한다)가 特殊建物의 火災豫防과 消火施設에 대한 安全點檢을 義務的으로 實施하도록 特別法(第16條 第1項)은 規定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實情을 보면 大部分의 企業이 施設, 生產, 販賣 為主의 經營을 해왔지 危險管理 分野에 있어서는 이를 等困視한것을 否認할 수 없다. 98億원의 保險金이 支給된 潤成紡績의 火災事件이나 數百名의 人命을 앗아간 大然閣과 市民會館의 火災事件은 危險에 대한 安全管理不注意에서 發生한것임이 밝혀 진것이다.

마라사 特殊建物에 대한 火災保險加入 義務化가 實施됨과 同時에 協會에 의한 安全點檢이 無料로 實行되는것은 火災의豫防에 寄與함은 물론, 損害의 輕減을 가져오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過去 消化施設 管理의 實態를 보면 法定 基本施設의 備置 自體도 되지 안했을 뿐아니라 한 번設置된 消火施設이나 消火器機도 適時의 點檢이 없어 作動不能狀態로 放置해 두었던 것이 常例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附保의 先行條件으로 實施되는 安全點檢은 火災의豫防과 損害擴散防止를 통하여 保險者나 被保險者에 相對的 利益을 가져다 주는 效用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

(나) 危險管理에 대한 認識提高

大量生產, 大量消費時代가 來到하여 企業의 大規模화가 이룩되고, 石油化學系列 및 聯關工場의 廣範面로 進出로 企業經營面에서도 製品管理, 生產管理, 品質管理, 人事管理등 傳統的인 經營管理外에 危險管理問題가 重大한 issue로 登場하였다. 各企業에 來어서도 企業管理部門中 危險管理外의 部門에 대한 費用投入은 不可缺한 原價의 構成要因으로 當然視된 反面 危險管理에 隨伴한 費用은 必要不可缺의 經費로 看做하지 않는 習性이 內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危險管理의 重要性이 認識되어 그 部門에 支出되는 費用은 當然한 原價의 一部를 構成하기에 이르렀음은 不幸中 多幸이라고 하겠다.

앞서도 指摘한바와 같이, 保險에서 捉保되는 危險 特히 火災危險은 企業의 存亡을 左右하는 極端的인 危險인데 反하여 다른 管理部門은 그 部門의 管理가 充分치 못한 경우에도 그 結果는 利益의 大小나 若干의 損失 發生問題로만 끝이 는것이지 根本的인 企業의 存亡과는 關係가 없기 때문에, 危險management問題는 어느 部門보다도 第1次의인 重要部門임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特別法의 制定으로 他意로나마 安全點檢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은, 企業經營上의 危險management를 實現시킨 結果가 되어 企業의 永續的인 發展에 貢獻한바 크다고 하겠다.

特別法施行에 따라 처음으로 安全點檢을 實施할 때 上記와 같은 危險management에 대한 重要性을 제대로 認識하지 못한 一部 特殊建物所有主의 非協助로 安全點檢에 많은 隘路를 開은바 있으나 2年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特殊建物所有主들의 認識度도 높아지고 點檢에 必要한 優良器機의 導入과 點檢技術의 向上으로 協會의 信賴度가 提高된 것은 多幸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다) 保險料 割引을 통한 負擔輕減

安全點檢이 가지는 重要性은 認定되면서도 그 實施의 初期에 많은 特殊建物所有主로 부터 拒否反應을 받은 것은 所有主들의 立場에서 보면 點檢費用負擔에 대한 念慮, 不完全施設이 確認될 경우의 後續措, 他人에 의한 不當한 干涉등이 主된 原因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理由는 保險加入義務에 대한 內心的反撥과 危險management에 대한 認識不足등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特殊建物所有主들이 火災豫防이나 消火施設의 新設 또는 補修에 따른 費用만 생각하였지 그것이 設置되어 協會의 安全點檢에 合格

되면 火災保險料에 대한 莫大한 割引이 있는點에 充分한 理解가 不足한것으로 알고 있다. 例를 들면 現行 火災保險料率制度下에서 消火施設割引率은 最高 基本料率의 40% 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工場의 年間 基本保險料가 500萬원 일때, 完璧한 消火施設을 備置한 保險加入者는 1년에 200萬원式의 割引惠澤을 받게 되는것이고, 5年間이면 1,000萬원의 保險料負擔이輕減되는 結果가 되는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200萬원의 割引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데 所要되는 消火施設의 設置費用이 1,000萬원이라고 할때, 費用支出이 아까워 消火施設을 하지 못한 保險契約者は 年間 500萬원의 保險料를 繼續的으로 納入해야 하지만, 그 施設을 完備한 保險契約者は 年間 300萬원의 保險料만 支給하게 되므로 5年後에는 施設費用을 回收할수 있을 뿐아니라 6年부터는 年間 200萬원式의 负擔을 輕減하게 되는것이다.

더구나 消火施設을 完備한 경우와 全然 갖추지 않는 경우의 火災發生可能性과 火災가 發生한 때의 損害輕減度는 比較할수 없을 程度의 差異가 있으므로, 後者の 경우는 企業經營을 賭博視하는 것과 같은것이라고 아니 할수 없으며, 前者の 경우는 保險料의 結果的節減은 물론 破滅의 危險에서 企業을 救하는 二重의 效果를 얻게 되는것이다.

(라) 消火設備의 改良과 消火器機製造業者에의 資金貸與

特別法 第18條에 의하면 協會는 特殊建物所有主에 대하여 消火施設의 改良에 必要한 資金을 貸與하고 消火器機의 製造業者에 資金을 貸與할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特殊建物火災保險으로 收入된 保險料는 優先的으로 이 保險에 直接關係되는 保險契約者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고 特別法을 遵守하는 特殊建物所有主를 火災로 부터 입는 損害에서 最大限으로 保護해

야 할 責任이 있음을 強調하는것이라고 하겠다.

一定 地域에 있는 特殊建物에 대하여 附保의義務를 賦課해놓고 消火施設의 未備나 消火器機의 機能低下로 火災의豫防과 損害의 輕減에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수 없다면 法制定의 根本趣旨를 흐리게 하는 結果가 되므로 비록 特殊建物所有主나 消火器機製造業者的 資金貸與가 伸縮性있는것으로 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方向의 投資는 다른 分野에의 投資보다도 格別히 考慮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特殊建物火災保險契約의 效用이 보다 높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特別法制定의 社會의인 效果도 極致에 다다를것으로 믿어진다.

IV. 結論에 代하여

火災保險에의 加入은 企業經營上 危險管理의 一環으로서 必須不可缺한것임은 疑心할餘地가 없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危險管理의 重要性이認識되지 못하고 있는 特殊與件下에서는 法制化한 非常措置를 通하여 이를 誘導하는데도相當한 妥當性을 가지고 있음을 再言할 必要도 없다고 하겠다.

특히 從來의 火災保險은 保險本來의 機能인 損害補償과 派生的機能인 金融機能만을 擔當하고있으나 特殊建物 火災保險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機能外에 無過失責任에 따른 身體損害賠償制度까지 確立함으로써 社會保障의 機能을 加味하였고, 그 위에 火災의豫防과 損害의 撫散防止등 保險會社와 保險加入者의 共同的 安全을 圖謀하고 있는데 重大한 特色이 있다고 하겠다.

率直히 말하면 保險者は 他力에 의한 販賣開拓 없이 莫大한 市場을 確保하였으므로 urrent消費된 努力의 剩餘分을 保險加入者가 惠澤을 받는 方向으로 努力하여야 할 것이고 保險加入者 역시 特殊建物에 대한 保險加入義務化가 一方의in 機能만을 強要하는것이 아니고自己保護를 助長시켜 주는 法的措置임을 認識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個人이나 企業을 不問하고自己財產의 蕩積에는 오랜 時間과 努力 및 犧牲이 隨伴하게 되는것이나, 不意의 災害는 하루 아침에 高貴한 財產을 앗아 가게 되는 것이므로 保險者나 保險加入者는 相互補完의in 關係를 維持하는데 서로의 認識을 새롭게 해야 할것이다.

<끝>